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 기 열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박기열 의원입니다.

지난 10월 16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, 품질을 향상시키고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75조에서 규정하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추가하는 것으로서

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일련의 설계심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설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주시고,

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